

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16-2109호

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재공람·공고

1. 2011.06.23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된 개포택지개발지구(공동주택) 특별계획구역19(도곡개포한신아파트-강남구 도곡동 464번지 일원)에 대하여, 2016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16.11.02.)결과 수정가결 되어, 당초 주민공람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바, 이를 해당 소유자에게 알리고자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, 관계도서를 강남구청 주택과 및 도곡2동 주민센터에 비치합니다.
2.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강남구청(주택과, ☎ 3423-6073)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2016 년 12 월 23 일
강 남 구 청 장 (인)

가. 공람기간 : 2016. 12. 23 ~ 2017. 01. 23. (공고기간 30일 이상)

나. 공람장소

- 강남구청 주택과 (☎ 3423-6073)
- 도곡2동 주민센터 (☎ 3423-7555)

다. 공람의견 제출 장소 : 위 공람장소

라. 공람내용

가) 정비사업의 명칭 :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
나) 정비구역 및 면적

구 분	정비사업 명칭	위 치	면 적(㎡)	비 고
신설	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	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4번지	36,473.0	-

다) 정비계획

(1) 토지이용계획

■당초(안)(강남구공고 제2015-702호(2015. 5. 2.~ 5. 31 공람내용, 이하 동일)

구 분	명 칭	면 적(㎡)			비 율(%)	비 고
		기 정	증(감)	변 경		
합 계		36,473.0	-	36,473.0	100.00	-
정비기반 시설 등	소 계	-	증) 2,174.0	2,174.0	5.96	기부채납: 2,174.0㎡
	도 로	-	증) 461.0	461.0	1.26	
	녹 지	-	증) 1,713.0	1,713.0	4.70	
택 지 (획 지)	소 계	36,473.00	감) 2,174.0	34,299.0	94.04	-

■변경(안)(2016. 11. 02 제19차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반영, 이하 동일)

구 분	명 칭	면 적(㎡)			비 율(%)	비 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	36,473.0	-	36,473.0	100.00	-
주거지역	소 계	-	증) 2,174.0	2,174.0	5.96	기부채납: 2,174.0㎡
	도 로	-	증) 461.0	461.0	1.26	
	녹 지	-	증) 1,713.0	1,713.0	4.70	
택 지 (획 지)	소 계	36,473.00	감) 2,174.0	34,299.0	94.04	-
	획지 1	31,953.06	감) 1,904.56	30,048.5	82.39	개포한신
	획지 2	4,519.94	감) 269.44	4,250.5	11.65	재능교육

(2)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계획

○ 용도지역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
구 분	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	기 정	증 감	변 경		
계		36.473.0	-	36.473.0	100.0	-
주거지역	제3종일반주거지역	36.473.0	-	36.473.0	100.0	-

○ 용도지구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지구명	지구의 세 분	위 치	면 적 (㎡)	연 장 (m)	폭 원 (m)	최 초 결정일	비 고
기정	2	미관 지구	일반 미관지구	사당동 ~ 도곡동 (매봉역앞 삼거리 ~ 매봉터널사거리)	148,800 (1,487)	6,200 (220)	양측12m (편측6m)	서고시373호 (90.11.7)	남부 순환로

※ ()는 구역내 수치임

(3) 도시계획시설(정비기반시설)의 설치에 관한 계획

○ 도 로 : 변경없음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 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광로	2	18	40	주 간선	6,500 (153)	압구정동 (도곡2동464)	포이동 (개포4동658-3)	일반 도로	-	건고시198 호 (71.04.07)	연주로
기정	광로	3	19	40	주 간선	35,306	삼전동 (광로2-28)	방화동 (중로2-249)	일반 도로	-	건고503 (69.8.27)	남부순환 로
기정	소로	1	400	10	국지 도로	300 (231)	광로2-18	근린공원 6	일반 도로	-	-	연주로 29길
변경	중로	3	404	12	국지 도로	300 (231)	광로2-18	근린공원 6	일반 도로	-	-	도로확폭 류별 및 번호변경 보행자우 선도로 폭원 2m 확폭

※ ()는 구역내 수치임

○ 녹 지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㉑	녹지	연결 녹지	도곡동 464	-	증)1,713.0	1,713.0	-	면적변경 없는 형태변경

라) 건축시설 계획

■ 당초(안)

결정 구분	구 역 구 분		가 구 또는 획 지 구 분		위 치	주 된 용 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	높이(m) /층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명 칭	면 적 (㎡)	명 칭	면 적 (㎡)				정비 계획	예정 법정상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 규	도곡개 포한신 아파트 주택재 건축사 업	36, 473	1	34,29 9	강남구 도곡동 464번지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 설	50 이하	250 이하	299.95 이하	100m이하 /35층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			· 건립규모 및 비율 기준 – 전용면적 60㎡이하 : 총세대수의 20%이상 – 전용면적 85㎡이하 : 총세대수의 60%이상, 전체연면적의 50% 이상 ·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조정될 수 있으며, 연면적은 공동주택 공급면적 기준 <table><tr><th rowspan="2">구분</th><th rowspan="2">전용 면적(㎡)</th><th colspan="2">세대수(세대)</th><th colspan="3">비율(%)</th><th rowspan="2">연면적 (㎡)</th><th colspan="2">비율(%)</th></tr><tr><th>소형</th><th>분양</th><th colspan="2"></th><th colspan="2"></th></tr><tr><td rowspan="2">60㎡이하</td><td>49㎡</td><td>64</td><td>–</td><td>7.03</td><td rowspan="2">28.35</td><td rowspan="2">87.25</td><td>6,152.49</td><td>4.50</td><td rowspan="2">84.07</td></tr><tr><td>59㎡</td><td>57</td><td>137</td><td>21.32</td><td>22,391.11</td><td>16.38</td></tr><tr><td>60~85㎡이하</td><td>84㎡</td><td>–</td><td>536</td><td colspan="2">58.90</td><td rowspan="3">12.75</td><td>86,391.84</td><td>63.19</td><td rowspan="3">15.93</td></tr><tr><td rowspan="2">85㎡초과</td><td>95㎡</td><td>–</td><td>60</td><td colspan="2">6.59</td><td>10,884.86</td><td>7.96</td></tr><tr><td>102㎡</td><td>–</td><td>56</td><td colspan="2">6.15</td><td>10,896.00</td><td>7.97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합 계</td><td colspan="2">910</td><td colspan="3">100</td><td>136,716.31</td><td colspan="2">100</td></tr></table>								구분	전용 면적(㎡)	세대수(세대)		비율(%)			연면적 (㎡)	비율(%)		소형	분양					60㎡이하	49㎡	64	–	7.03	28.35	87.25	6,152.49	4.50	84.07	59㎡	57	137	21.32	22,391.11	16.38	60~85㎡이하	84㎡	–	536	58.90		12.75	86,391.84	63.19	15.93	85㎡초과	95㎡	–	60	6.59		10,884.86	7.96	102㎡	–	56	6.15		10,896.00	7.97	합 계		910		100			136,716.31	100	
구분	전용 면적(㎡)	세대수(세대)		비율(%)			연면적 (㎡)	비율(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소형	분양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0㎡이하	49㎡	64	–	7.03	28.35	87.25	6,152.49	4.50	84.0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59㎡	57	137	21.32			22,391.11	16.3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0~85㎡이하	84㎡	–	536	58.90		12.75	86,391.84	63.19	15.9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5㎡초과	95㎡	–	60	6.59			10,884.86	7.9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02㎡	–	56	6.15			10,896.00	7.9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합 계		910		100			136,716.31	1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심의완화사항			·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· 건축법,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· 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		· 건축한계선 8m : 남부순환로변 · 건축법,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· 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※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시 조정될수 있음

■변경(안)

결정 구분	구 역 구 분		가 구 또는 획 지 구 분		위 치	주 된 용 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	높이(m) /층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명 칭	면 적 (㎡)	명 칭	면 적 (㎡)				정비 계획	예정 법정상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 규	도곡개 포한신 아파트 주택재 건축사 업	36, 473	획지1 (공동 주택)	30,04 8.5	강남구 도곡동 464번지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 설	50이하	250 이하	299.56 이하	100m이하 /35층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획지2 (재능 교육)	4,250 .5		업무시설 및 1·2층 근린생활시 설	50이하	250 이하	-	100m이하 /3층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			· 건립규모 및 비율 기준 - 전용면적 60㎡ 이하 : 총세대수의 20%이상 - 전용면적 85㎡ 이하 : 총세대수의 60%이상, 전체연면적의 50% 이상 ·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조정될 수 있으며, 연면적은 공동주택 공급면적 기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<table><tr><th rowspan="2">구분</th><th rowspan="2">전용 면적(㎡)</th><th colspan="2">세대수(세대)</th><th colspan="3">비율(%)</th><th rowspan="2">연면적 (㎡)</th><th colspan="2">비율(%)</th></tr><tr><th>소형</th><th>분양</th><th colspan="3"></th><th colspan="2"></th></tr><tr><td rowspan="2">60㎡ 이하</td><td>49㎡</td><td>56</td><td>-</td><td>6.79</td><td rowspan="2">23.88</td><td rowspan="3">85.70</td><td>5,562.86</td><td>4.27</td><td rowspan="2">82.40</td></tr><tr><td>59㎡</td><td>49</td><td>92</td><td>17.09</td><td>16,822.22</td><td>12.90</td></tr><tr><td>60~85㎡ 이하</td><td>84㎡</td><td>-</td><td>510</td><td colspan="3">61.82</td><td>85,012.28</td><td>65.23</td><td rowspan="3">17.60</td></tr><tr><td rowspan="2">85㎡ 초과</td><td>95㎡</td><td>-</td><td>60</td><td colspan="3">7.27</td><td>11,257.84</td><td>8.64</td></tr><tr><td>102㎡</td><td>-</td><td>58</td><td colspan="3">7.03</td><td>11,672.14</td><td>8.96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합 계</td><td colspan="2">825</td><td colspan="3">100</td><td>130,327.33</td><td colspan="2">100</td></tr></table>	구분	전용 면적(㎡)	세대수(세대)		비율(%)			연면적 (㎡)	비율(%)		소형	분양						60㎡ 이하	49㎡	56	-	6.79	23.88	85.70	5,562.86	4.27	82.40	59㎡	49	92	17.09	16,822.22	12.90	60~85㎡ 이하	84㎡	-	510	61.82			85,012.28	65.23	17.60	85㎡ 초과	95㎡	-	60	7.27			11,257.84	8.64	102㎡	-	58	7.03			11,672.14	8.96	합 계		825		100		
구분	전용 면적(㎡)	세대수(세대)				비율(%)			연면적 (㎡)	비율(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소형	분양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0㎡ 이하	49㎡	56	-	6.79	23.88	85.70	5,562.86	4.27	82.4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59㎡	49	92	17.09			16,822.22	12.9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0~85㎡ 이하	84㎡	-	510	61.82			85,012.28	65.23	17.6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5㎡ 초과	95㎡	-	60	7.27			11,257.84	8.6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02㎡	-	58	7.03			11,672.14	8.9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합 계		825		100			130,327.33	1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심의완화사항			·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· 건축법,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· 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		· 건축한계선 8m : 남부순환로변 / 3m : 이면도로 · 건축법,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· 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※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시 조정될수 있음

○ 개발가능(상한)용적률 산정

■ 당초(안)

구 분		산정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토지이용 계획	계	대지면적	신설 정비기반시설	신설 정비기반시설내 국·공유지	대지(획지)내 용도폐지되는기존 기반시설 국·공유지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6,473㎡	34,299㎡	2,174㎡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	· 순부담면적 =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면적 -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-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·공유지 면적 = 2,174㎡ - 0㎡ - 0㎡ = 2,174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계획용적률	· 계획(기준)용적률 = 21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개발가능 용적률 산정	<table><tr><th colspan="2">구 분</th><th colspan="2">판 단 기 준</th><th>비 고</th></tr><tr><td colspan="2">우 수 디자인</td><td colspan="2">· 「공동주택 심의기준」의 디자인 다양화기준의 권장기준 충족 후 건축위원회에서 인정 시</td><td>5%</td></tr><tr><td>지속가능형 건축구조</td><td>라멘구조 무량판구조</td><td colspan="2">·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세부평가기준에 충족하여야 함</td><td>10%</td></tr><tr><td rowspan="2">친환경/ 신재생 에너지</td><td>신재생 에너지</td><td colspan="2">· 건축비의 1%이상 ※ 신·재생 에너지 설계는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, 자연채광 시스템 적용에 한함</td><td rowspan="2">5%</td></tr><tr><td>친환경 최우수등급</td><td colspan="2">· 친환경 건축물 인증 - 최우수 (85점 이상)</td></tr><tr><td colspan="5">총 20% 적용</td></tr></table>					구 분		판 단 기 준		비 고	우 수 디자인		· 「공동주택 심의기준」의 디자인 다양화기준의 권장기준 충족 후 건축위원회에서 인정 시		5%	지속가능형 건축구조	라멘구조 무량판구조	·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세부평가기준에 충족하여야 함		10%	친환경/ 신재생 에너지	신재생 에너지	· 건축비의 1%이상 ※ 신·재생 에너지 설계는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, 자연채광 시스템 적용에 한함		5%	친환경 최우수등급	· 친환경 건축물 인증 - 최우수 (85점 이상)		총 20% 적용				
	구 분		판 단 기 준	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우 수 디자인		· 「공동주택 심의기준」의 디자인 다양화기준의 권장기준 충족 후 건축위원회에서 인정 시		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지속가능형 건축구조	라멘구조 무량판구조	·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세부평가기준에 충족하여야 함		1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친환경/ 신재생 에너지	신재생 에너지	· 건축비의 1%이상 ※ 신·재생 에너지 설계는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, 자연채광 시스템 적용에 한함		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친환경 최우수등급	· 친환경 건축물 인증 - 최우수 (85점 이상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총 20% 적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· 허용용적률 = 기준용적률 + β = 210% + 20% = 23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※ β =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· 개발가능용적률 = 허용용적률 + (계획용적률 × 1.3α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= 230% +(210 × 1.3 × 0.0634) = 247.3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※ α =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 /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 나머지 대지면적 = 2,174㎡ / 34,299㎡ = 0.063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· 정비계획용적률 = 247.3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예정법적 상한용적률	· 예정법적상한용적률 = 299.95%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※ 허용용적률 20%이하가 포함된 용적률임

※ 인센티브항목에 대한 허용용적률 유효기간은 결정고시 후 3년 이내 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효력이 자동 상실됨

※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심의결과 범위 내에서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수디자인건축물 등 해당 인센티브항목을
확정하여 승인 또는 허가

■변경(안)

· 획지-1(공동주택)

구 분		산정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토지이용 계획	계	대지면적	신설 정비기반시설	신설 정비기반시설내 국·공유지	대지(획지)내 용도폐지되는기존 기반시설 국·공유지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1,953.06㎡	30,048.5㎡	1,904.56㎡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	· 순부담면적 =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면적 -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-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·공유지 면적 = 1,904.56㎡ - 0㎡ - 0㎡ = 1,904.56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계획용적률	· 계획(기준)용적률 = 21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개발가능 용 적 륜 산 정	<table><tr><th colspan="2">구 분</th><th colspan="2">판 단 기 준</th><th>비 고</th></tr><tr><td colspan="2">우 수 디자인</td><td colspan="2">· 「공동주택 심의기준」의 디자인 다양화기준의 권장기준 충족 후 건축위원회에서 인정 시</td><td>5%</td></tr><tr><td>지속가능형 건축구조</td><td>라멘구조 무량판구조</td><td colspan="2">·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세부평가기준에 충족하여야 함</td><td>10%</td></tr><tr><td rowspan="2">친환경/ 신재생 에너지</td><td>신재생 에너지</td><td colspan="2">· 건축비의 1%이상 ※ 신·재생 에너지 설계는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, 자연채광 시스템 적용에 한함</td><td rowspan="2">5%</td></tr><tr><td>친환경 최우수등급</td><td colspan="2">· 친환경 건축물 인증 - 최우수 (85점 이상)</td></tr><tr><td colspan="5">총 20% 적용</td></tr></table>					구 분		판 단 기 준		비 고	우 수 디자인		· 「공동주택 심의기준」의 디자인 다양화기준의 권장기준 충족 후 건축위원회에서 인정 시		5%	지속가능형 건축구조	라멘구조 무량판구조	·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세부평가기준에 충족하여야 함		10%	친환경/ 신재생 에너지	신재생 에너지	· 건축비의 1%이상 ※ 신·재생 에너지 설계는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, 자연채광 시스템 적용에 한함		5%	친환경 최우수등급	· 친환경 건축물 인증 - 최우수 (85점 이상)		총 20% 적용				
	구 분		판 단 기 준	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우 수 디자인		· 「공동주택 심의기준」의 디자인 다양화기준의 권장기준 충족 후 건축위원회에서 인정 시		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지속가능형 건축구조	라멘구조 무량판구조	·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세부평가기준에 충족하여야 함		1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친환경/ 신재생 에너지	신재생 에너지	· 건축비의 1%이상 ※ 신·재생 에너지 설계는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, 자연채광 시스템 적용에 한함		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친환경 최우수등급	· 친환경 건축물 인증 - 최우수 (85점 이상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총 20% 적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· 허용용적률 = 기준용적률 + β = 210% + 20% = 23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※ β =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· 개발가능용적률 = 허용용적률 + (계획용적률 × 1.3α) = 230% +(210 × 1.3 × 0.0634) = 247.3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※ α =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 /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 나머지 대지면적 = 1,904.56㎡ / 30,048.5㎡ = 0.063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· 정비계획용적률 = 247.3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예정법적 상한용적률	· 예정법적상한용적률 = 299.56%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※ 허용용적률 20%이하가 포함된 용적률임

※ 인센티브항목에 대한 허용용적률 유효기간은 결정고시 후 3년 이내 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효력이 자동 상실됨

※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심의결과 범위 내에서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수디자인건축물 등 해당 인센티브항목을 확정하여 승인 또는 허가

• 획지-2(재능교육)

구 분		산정내용				
토지이용 계 획	계	대지면적	신설 정비기반시설	신설 정비기반시설내 국·공유지	대지(획지)내 용도폐지되는기존 기반시설 국·공유지	
	4,519.94㎡	4,250.5㎡	269.44㎡	-	-	
공공시설 부 지 제공면적	· 순부담면적 =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면적 -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-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·공유지 면적 = 269.44㎡ - 0㎡ - 0㎡ = 269.44㎡					
계획용적률	· 계획(기준)용적률 = 210%					
개발가능 용 적 륜 산 정	유형	항 목	인센티브 적용 기준	완 화 내 용	비고	
	규 제 형	대지내 공지	건축한계선	기준용적률 × (건축한계선 후퇴부분면적 / 대지면적) × 1.25		
		주차 계획	공동주차출입구 또는공용주차장 설치시	기준용적률 × 0.07		
	유 도 형	대지내 공지	공개공지	기준용적률 × {(제공면적-의무면적) ÷ 대지면적} × α		
		건축물 용도	권장용도준수	기준용적률 × (권장용도면적 ÷ 주차장제외건축면적) × 0.15		
		건축물 형태	탐상형건축물 조성기준 준수	기준용적률 × 0.05		
	의 무 관 한 사 항	친환경 계획에 관한 사항	자연지반 보존	기준용적률 × (보존면적 ÷ 대지면적) × 0.2		
			옥상녹화	기준용적률 × (제공면적 ÷ 대지면적) × 0.1		
			녹색주차장, 투수성포장	기준용적률 × (설치면적 ÷ 대지면적)으로서		
				기준용적률 × 0.05		
			중수도시설 설치주	기준용적률 × 0.06		
			빗물이용시설주	기준용적률 × 0.06		
			신·재생에너지 사용	기준용적률 × 0.08		
			에너지 절약	1등급	기준용적률 × 0.08	
				2등급	기준용적률 × 0.05	
	총 20%적용					
	※ 개포택지구단위계획 남부순환로변 3종일반주거지역 인센티브기준 준용					
	· 허용용적률 = 기준용적률 + β = 210% + 20% = 230%					
	※ β =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					
	· 개발가능용적률 = 허용용적률 + (계획용적률 × 1.3α) = 230% +(210 × 1.3 × 0.0634) = 247.3%					
※ α =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 /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 나머지 대지면적 = 269.44㎡ / 4,250.5㎡ = 0.0634						
· 정비계획용적률 = 247.3%						

※ 허용용적률 20%이하가 포함된 용적률임

※ 인센티브항목에 대한 허용용적률 유효기간은 결정고시 후 3년 이내 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효력이 자동 상실됨

○ 소형주택건설에 관한 계획

■당초(안)

건립위치	부지면적 (㎡)	동수	세대수		세대규모 (㎡)(전용)	용적률 산정용연면적	비고 (연면적)
강남구 도곡동 464번지	34,299.00	8	전용	64	49.90	9,075.69㎡	(기준:9,029.21㎡ 이상) (계획:9,075.69㎡)
			60㎡ 이하	57	59.95		

■변경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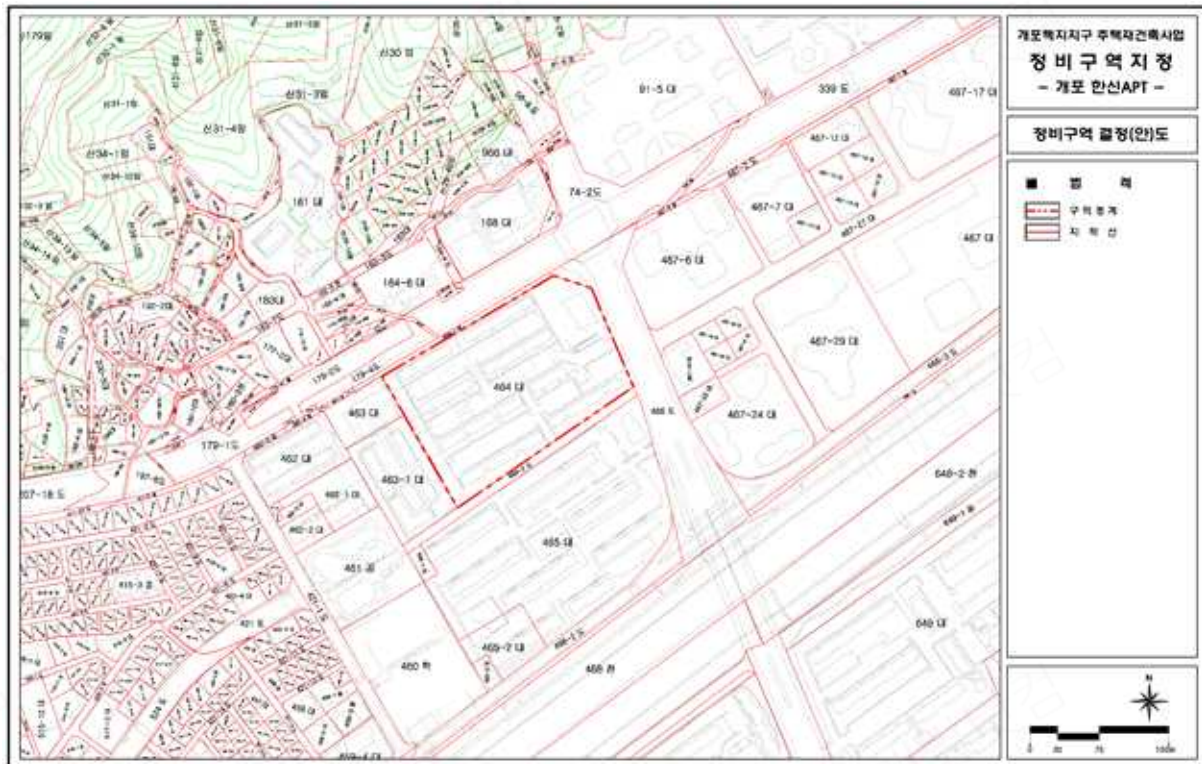
건립위치	부지면적 (㎡)	동수	세대수		세대규모 (㎡)(전용)	용적률 산정용연면적	비고 (연면적)
강남구 도곡동 464번지	30,048.50	-	전용	56	49.88	7,852.18㎡	(기준:7,851.67㎡ 이상) (계획:7,852.18㎡)
			60㎡ 이하	49	59.95		

마. 기타사항

-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(안)을 참조하시기 바라며, 개별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.

< 개포한신아파트 관련도면>

■ 정비구역결정(안)도(변경없음)



■ 용도지역 · 지구도(변경없음)



정비계획결정(안)도

- 당초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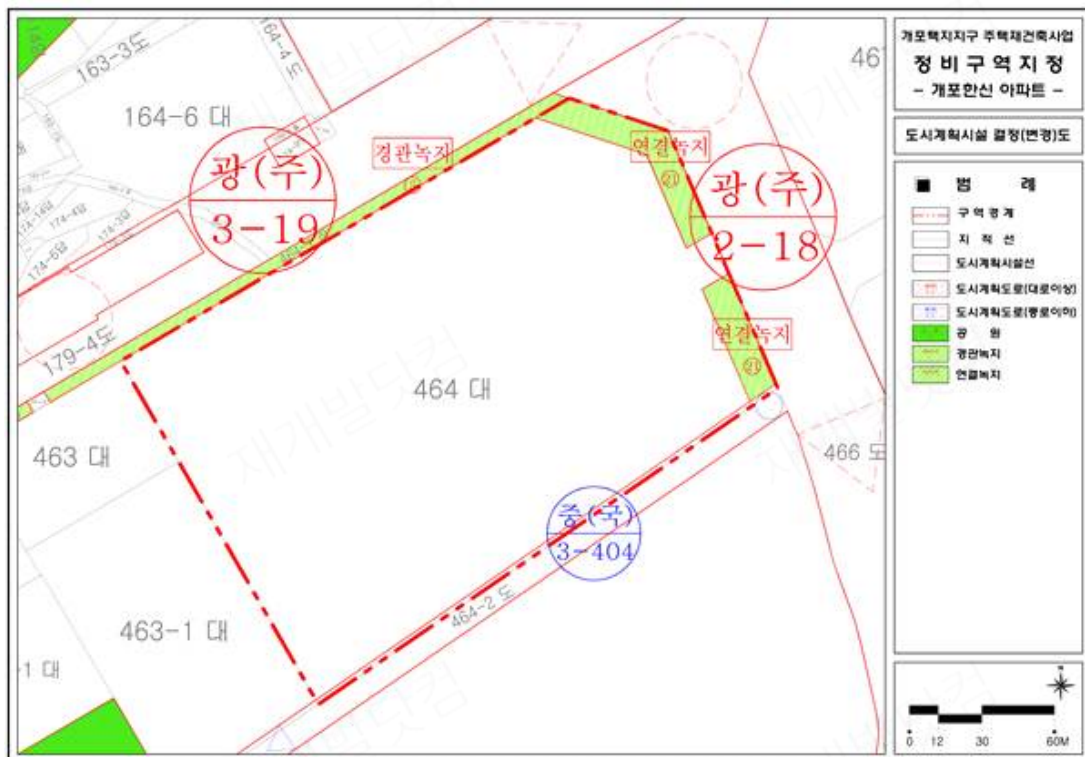


- 변경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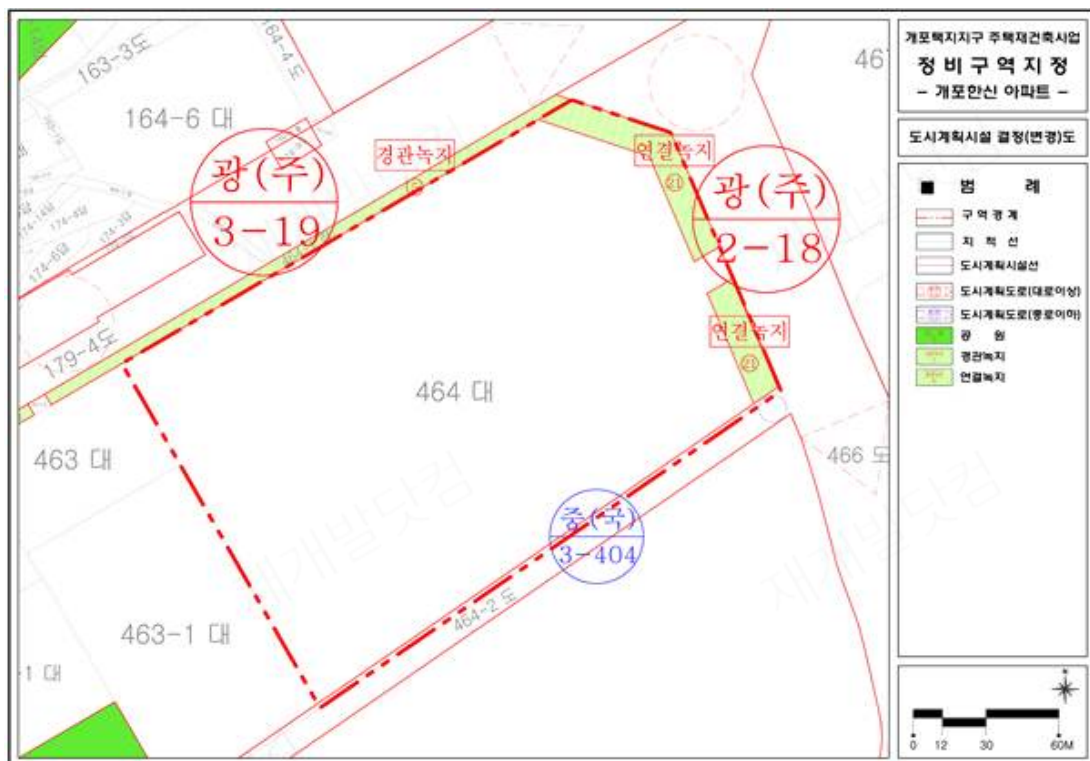


■ 도시계획시설결정(안)도

- 당초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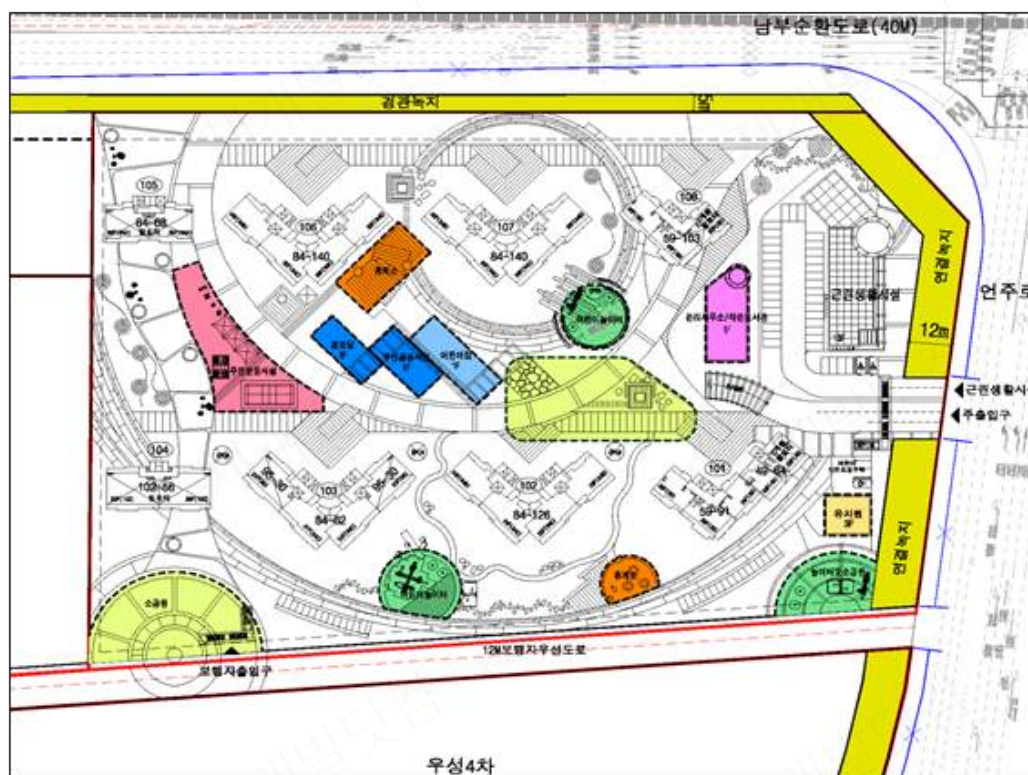


- 변경(안)



■ 건축배치계획(안)도

- 당초(안)



- 변경(안)



공 램 의 견 서

(접수번호 :)

☐ 대상사업

안 건	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(안)
사업위치	강남구 도곡동 464번지

☐ 공람기간 : 2016. 12. 23. (금) ~ 2017. 1. 23.(월)☐ 의견제출자

성 명	(전화번호:)
주 소	
소유물건	위 치
	규 모

☐ 제출의견

201 . . .

의견제출자 성명 (인)

강 남 구 청 장 귀 하